

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(안 제4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18조, 제19조)

○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작성·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0조)

○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정하였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 규정을 보칙에 단일하게 규정(안 제20조)

4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의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, 효율적인 조

례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체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하며,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작성·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○ 다만,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현행 채수계량기 설치상태 검사 사항(분기별 1회)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※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·도 중 10개 시·도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 실시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